장기요양보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이용자인 수급자(보호자)와 제공자인 기관과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제공을 돕고자 함에 있다.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하되 이용에 관한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수급자(보호자) 선택을 존중한다.

3. 이용절차

구 분	내 용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해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한다.
계약서작성	급여제공계약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1부는 센터에 보관한다.
계약서통보	계약체결 또는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전자문서 방식을 통해 통보한다.
급여기록 및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록, 수급자에게 제공한다.(일지작성 시 주1회, RFID 전송 시 월1회)
급여제공결과평가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 한다.(2023.01.01.신설)
급여비용명세서제공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세부산정내역 명시 · 제공한다.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 또는 홈텍스에 제출한다.
서비스종료	서비스 종료는 본인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4.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한도액(원) 2023년(변경)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5. 재가장기요양기관 1회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당)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2025년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구분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2025년	86,480	77,970	48,690

6.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한도액	구 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85%	15%
	91%	9%
	94%	6%
	100%	0%